

IFOAM 총회 진행 규칙

§ 1 개회(Call to Order)

총회는 IFOAM 회장에 의해 개최되고 회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부회장에 의해 개최되며, 둘 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계 위원회가 선정한 인물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 회장은 법률에 명시된 바를 충족하는 정족수를 확립한다.

§ 2 의장과 발언(Chairing and Speaking)

2.1 회장은 세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두 명 의장을 소개한다. 그들은 단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투표를 통해 세계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는다. 두 명은 총회의 의장직을 교대로 맡는다.

2.2 의장은 절차상 일정을 결정하고 누구에게 발언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러한 규칙들을 진행과정에 적용한다. 의장은 절차상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판단의 근거로 'Roberts Rules of Order'를 적용한다.

2.3 의사 진행상의 문제나 의장이 이전에 발표한 결정에 의해 발언자의 리스트가 비공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IFOAM의 정회원과 IFOAM의 준회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

2.4 세계 위원회나 의장에 의해 초청된 경우 IFOAM의 국제적 기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표자로서의 발언권이 주어질 수 있다.

2.5 사람들은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 전에 발언권을 받아야만 한다.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성명과 정회원/준회원 여부 또는 2.4에서 언급한 대표자인 경우에는 기구 이름 등을 명시한 투표용지 또는 발언권 카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의례, 관련성과 규율(Courtesy, Relevance, and Discipline)

발언자들은 의장에게 발언해야 한다. 의장이 말할 때는 발언하는 사람이나 발언하기를 제안하는 누구든 이를 중단하여 의장의 말이 방해 없이 들려야 한다. 발언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의 중인 문제나 의사진행문제에 한정해야 한다(see §9). 의장은 무관한 진술, 반복, 부적절한 언어, 비난, 순서위반 등을 규제하기 위해 발언자를 호명할 수 있으며,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발언을 중지시키고 회의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의장의 결정이 끝난 의사진행문제는 다시 논의에 붙이지 않는다.

§ 4 간부(Officers)

세계 위원회는 의사록 관리자, 중재자, 국회법 학자와 투표용지 개수를 세는 사람을 지정한다. 중재자는 투표용지 세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투표용지 세는 일은 국회법 학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 국회법 학자는 진행 규칙과 Robert's Rules of Order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할 때 자문해 줄 수 있다.

§ 5 의사록(Minutes)

의사록은 모든 결정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심사된 의사록은 Internal Letter (IFOAM in Action)로 발간된다.

§ 6 발의(Motions)

6.1 일반 운영(General conduct)

IFOAM 임원들과 세계위원회는 총회에서 발의 할 수 있다. 제안들은 규정에 따라 총회에 제출된다. 의원석에서 나온 제안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 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안들은 의장이 결정하는 순서와 시간에 따라 논의되고 수정되며 투표된다. 의장은 공평성과 정당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시행한다. 의장은 처음 발의한 IFOAM 회원이나 세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제안에 대한 첫 번째 발언을 허용할 것이다. 또한 의장은 논의와 수정을 하기 이전에 명확성을 위한 질문과 답변을 허용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으로 제안의 발의자가 직접 질문과 개정 사항에 답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6.2 의안의 수정

- a. 모든 제안의 수정은 논의되는 원안과 관련되어야 하며 원안과 직접적으로 반대되지 말아야 한다. 의장은 제안의 수정을 수락하거나 수락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b. 수정안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전달된다.
- c. 개정안은 회원들이 개정안에 대해 표명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전시되고 읽혀지며, 어떤 개정안도 재청되기 전에 논의되거나 회의로 넘겨지지 않는다.
- d. 개정안이 제안되면 원안에 대한 논의는 중지되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집중한다.
- e. 회원들의 동의에 따라 개정안은 철회되며, 회원들의 재청에 의해 개정안이 승인된다.
- f.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원안이 앞으로 논의되거나 개정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제가 된다. 개정이 실패할 경우 원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 g. 의장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 가능하다. 일단 의장이 이것을 수락할 경우 절차는 6.2의 b에서 f까지의 절차를 이용한다. 그러나 의장이 이로 인해 회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믿을 경우, 의장은 첫 번째 개정안이 결정되면 그 다음의 결정은 각각 차후에 논의되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다.

6.3 우호적인 개정안(Friendly amendment)

주해: 우호적인 개정안이란 주요 의제의 목적을 공감하는 누군가가 개정을 통해 의안의 진술내용이나 주요 의제의 의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발의자의 더 나은 만족을 위해 제안된 짧은 수정안을 말한다.

- a. 우호적인 개정안은 우호적인 개정안의 제안자에 의해 그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 b. 우호적인 개정안은 6.2의 a-c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재청이 필요하지 않다.
- c. 건의된 우호적 개정안은 원 의제의 제안자가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 d. 개정안이 수락될 경우 의제는 차후의 논의나 투표 없이 개정되며 논의는 수정된 주요 의제에 대해 계속된다.
- e. 개정안이 수락되지 않을 경우 우호적인 개정안의 작성자는 이 개정안을 “일반 개정안(General amendment)”으로써 공표한다. 이런 경우 Section의 모든 부분에 대해 6.2를 적용한다.

6.4 의제의 연기(Postponing Motions)

- a. 발언권을 획득한 어떤 회원이나 의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고려를 회기 내 어떤 기간이나 날짜로 연기할 수 있다. 동의는 구두로 만들어지며 반드시 재청 되어야 한다.
- b. 의제의 연기에 대한 논의는 연기의 타당성에 국한되어야 한다.
- c. 연기하는 기간을 수정해야 하는 의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6.2. b-f의 의제의 수정에 대한 규칙을 따른다.

d. 의제의 연기가 실패될 경우 이전의 주 의제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6.5 다음 의제로의 진행 (Moving to next agenda point)

a. 발언권을 받은 어떤 회원이든 의장이 다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갈 수 있다.

b. 구두를 통해 발의하며 재청되어야 한다. 재청 된 경우 의제는 어떤 논쟁이나 수정을 하지 않고 투표된다.

c. 의제가 통과되면 논의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d. 의제가 통과되지 못하면, 주요 의제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6.6 발의의 취소 (Withdrawing Motions)

a. 원안이나 수정하기 위한 의제를 제안한 회원은 발언권을 얻어 발의를 취소할 수 있다. 이의가 없을 경우 의제는 취소되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종결한다. 의제를 재청한 사람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b. 이의가 없을 경우 취소를 위한 발의가 필수적이다. 취소를 위한 발의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재청되어야 한다. 의제에 대한 논의 없이 투표를 실시한다. 이 제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주요 의제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6.7 논의의 종결과 투표의 실시(Ending debate and calling for a vote)

a. 발언권을 받은 어떤 사람이든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중지하고 의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제안 할 수 있다.

b. 발의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재청되어야 한다. 만약 재청될 경우 그것은 토의와 이후의

수정을 하지 않고 투표된다.

c. 의제가 통과되면 의제에 대한 투표는 이후의 논의나 수정을 하지 않고 채택된다.

d. 의제가 통과되지 못하면 주요 의제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 7 투표(Voting)

투표 카드를 가진 IFOAM 회원만이 총회에 투표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

기권과 무효표는 투표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규정에서 채택되기 위해 2/3이상의 투표율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 투표율이 단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8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Questions of Order)

회원이 의사진행 절차상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믿는 경우 회원은 일어나서 의장에게 “ 의장님 저는 의사진행상의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말한다. 의장의 승인 후에 회원은 의사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한다. 그리고 의장은 질의를 허용하거나 그에 따라 절차를 수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9 권고와 제안(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9.1 권고안은 서면으로 총회에 제출된다. 모든 권고안들은 총회 초기에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는 절차 상 합의된 과정에 기초한다. 권고안은 수용되기 위해서 과반 수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한다. 권고안은 의사록에 포함된다. 세계 위원회는 차기 총회에 권고안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이나 고려사항이 있었는지를 보고한다.

9.2 총회를 평가하기 위해 참가자는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제안들은 성공적인 총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세계 위원회는 결과를 수집하여 평가의 결과를 다시 회원들에게 보고해 준다.

§ 10 세계 위원회 선출(Election of the World Board)

세계 위원회는 지면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첫 번째로 각 회원들은 최대 10명의 후보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출된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첫 번째의 10명의 후보들이다.

만약 첫 번째 선거에서 모든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남은 자리를 위한 두 번째 투표가 이루어진다. 투표할 수 있는 최대 후보자 수는 남은 자리의 수와 같다.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후보자가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당선된다.

각 투표 시 자리수의 50% 이하의 득표를 한 경우는 무효로 여긴다.

§ 11 집행부의 선출과 발표 (Election and Presentation of the Executive Board)

IFOAM의 규율에 따라 세계 위원회는 세계위원회를 선출한 총회의 기간 동안 집행부를 선택한다 (조항 §6 참고). 총회가 끝나기 전에 세계위원회는 총회에 새로 선출된 집행부를 발표한다.

§ 12. 의사 진행 규칙의 수정 (Amendment of the Rules of Procedure)

12.1 의사진행 규칙의 수정은 세계위원회나 또는 적어도 40명 이상의 회원에 의해 제안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적어도 총회 2달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전 총회의 의제와 의사록이 승인된 후,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투표된다. 만약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개정안은 현재의 총회에 적용한다.

12.2 회기 이전 적당한 시간에 공표되지 않은 세계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2/3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12.3 총회의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규칙은 적어도 40명 이상의 대표 회원의 제안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이후에 제안에 대하여 2/3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만약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개정안은 승인 이후에 즉시 총회에 적용한다.

첫 번째로 1992년 브라질의 Sao Paul에서 IFOAM의 총회에 의해 승인됨

2002년 8월 캐나다의 Victoria에서 IFOAM의 총회에서 완벽하게 개정됨

최종적으로 2005년 9월 호주의 Adelaide에서 총회에 의해 수정됨